

제404회 국회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3월2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5)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9)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1)
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7.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2)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7)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4)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26)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5)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1)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9)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0)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0)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3)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6)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7)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0)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5)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6)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2)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4)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7)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2)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6)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4)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7)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9)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1)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5)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4)
4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5)
4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5)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4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
4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
5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51.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8)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6)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6)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7)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5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 상정된 안건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 4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 4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5) ..... 4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9) ..... 4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1) ..... 4
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 4
7.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2) ..... 4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7) ..... 4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4) ..... 4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26) ..... 4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5) ..... 4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1) ..... 4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9) ..... 4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0) ..... 4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0) ..... 4

|                                                                                 |   |
|---------------------------------------------------------------------------------|---|
|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3) .....                             | 4 |
|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6) .....                             | 4 |
|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                    | 4 |
|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                             | 4 |
|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                             | 4 |
| 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                             | 4 |
|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                             | 4 |
| 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                             | 4 |
|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                             | 4 |
|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                              | 4 |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                              | 4 |
|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7) .....                            | 4 |
|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0) .....                            | 4 |
|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5) .....                            | 4 |
|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6) .....                            | 4 |
|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2) .....                            | 4 |
|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4) .....                            | 4 |
|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7) .....                            | 4 |
|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2) .....                            | 4 |
|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6) .....                            | 4 |
|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4) .....                            | 4 |
|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7) .....                            | 4 |
|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9) .....                            | 4 |
|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1) .....                            | 4 |
|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5) .....                            | 4 |
|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4) .....                            | 5 |
| 4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5) .....                            | 5 |
| 4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5) .....                            | 5 |
|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              | 5 |
|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                        | 5 |
| 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                        | 5 |
|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                        | 5 |
| 4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 .....                      | 5 |
| 4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br>번호 2118611) ..... | 5 |
| 5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                              | 5 |
| 51.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8) ...                | 5 |
|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6) ...                  | 5 |
|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6) ...                  | 5 |
|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 ...                  | 5 |
|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7) ...                  | 5 |
|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                  | 5 |
| 5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                              | 5 |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위원님들 충분히 의견 주시고 정부 측도 충분히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5)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9)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1)
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7.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2)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7)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4)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26)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5)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1)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9)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0)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0)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3)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6)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7)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0)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5)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6)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2)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4)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7)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2)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6)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4)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7)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9)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1)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5)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4)
4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5)
4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5)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4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
4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
5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51.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8)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6)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6)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7)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5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소위원장 강훈식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입니다.

각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아래 표를 보시면 명칭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다음에 업무 범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어린이 식생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해서 본다면 타당한 입법 조치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업무가 농림부의 식생활교육지원법 21조에 따른 식생활 조사·연구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이 업무 영역을 구분해 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2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광고시간 제한·금지 대상의 매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광고시간 제한·금지 등의 대상 매체에 기존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에 더해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우리가 알고 있는 IPTV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IPTV 부분이 필요성에 비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에다가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는 주류 광고가 있고 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타당한 입법 조치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통위에서 IPTV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 뿐만 아니라 VOD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광고시간 제한은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이를 반영해서 실시간 방송에 한정해서 IPTV의 광고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세 번째……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12페이지입니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시설 기준 등 총리령 개정 시 복지부 협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 주요 내용 표를 바로 보시면 현행법상 총리령을 복지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6조 4항부터 24조 제2항까지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시설 기준이라든가 품질인증식품 표시 수수료 등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고, 당해 업무는 식약처의 업무라서 식약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무적 협의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총리령 입안 과정에서 부처 협력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한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지실사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철회한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거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행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 사전등록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외제조업소의 경우에 식약처에서 현지실사계획을 통보하면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을 철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추후 동일 작업장에 대해서 등록을 다시 신청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 등록제도의 특성상 법률적 근거 없이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도 재등록을 제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당해 경우에는 완화된 허가제 형태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제안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지실사계획을 통보받은 후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을 철회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일률적인 재등록을 방지해서 위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영업장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 등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

치입니다.

다만 모든 목적이 현지실사 회피 목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실사 회피 목적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철회한 사례도 있을 수 있는바 당해 경우에는 현지실사의 실시로 등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실사 외에 비대면 조사, 서류 검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등록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이 취소된 영업자의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이 되고 유사한 입법례는 다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최재형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강훈식 예, 말씀하십시오.

최재형 위원님.

○최재형 위원 1항의 ‘등록’을 ‘등록을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 등록 신청만 하면 마치 수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이걸 등록으로 그대로 놓고 총리령에 이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등록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우영택 위원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 용어에 있어서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행위인데 마치 민간인이 원하는 사람이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등록

을 신청하는 게 맞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어서 등록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명칭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또한 12조에 보시면 해외작업장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작업장과 해외제조업소가 각기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서 또 일괄적으로 맞출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지난번에 논의를 했던 법인 것 같은데 그때 국내제조업소의 경우에 취소하면 다시 재등록을 못 하게 역시 했지요. 그때도 여기 똑같이 2년이었던가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예,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예.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4건의 법률 일부 개정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정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안을 정부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소관 4개 법률의 4개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통합하거나 그 소속을 하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4건의 법률안을

보시면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인데 이 가운데서 앞의 3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사 위원회 간 통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위원 구성을 변경해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표시·광고법,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각각 법률에 있는 위원회는 그걸 삭제하고 3개 위원회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이에 맞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되는 3개 위원회는 식품 안전이라는 큰 맥락에서 유사점은 있습니다. 이를 식품 분야를 대표하는 심의 의결 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숫자를 줄여서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기능이 세부적으로는 일부 다르고 위원 구성도 상이한 각각의 위원회를 규모가 큰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로 인한 비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더불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 부분은 삭제하지 않아야 되는 무관한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자구 수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를 잠시 보시면 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현황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시도록 정리를 했고요. 통합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현행하고 있는 네 가지 사항 외에 개정안에서 추가하는 것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변형위원회는 식품위생법에 있는 위원회고 다른 위원회, 그러니까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에 의한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이 법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한 규정으로 봐서 통합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100명 이내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위원장 포함해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게 하고, 다음 각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해서 식품위생·식품영양에 전문성이 있는 분, 표시·광고, 그다음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폐합 대상 위원회의 운영 현황은 3개의 통폐합 대상 운영위원회의 회의 실적, 개최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금번 법안의 개정 취지는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다만 어떤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 분야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어떤 대외적인 발표를 식임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위상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어떤 전문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은 저희가 운영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강기운 위원님.

○강기운 위원 차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위원회 수를 줄여서 효율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보면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또 200명 이내로 늘리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는 이유가 활동이 미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통폐합한다고 이렇게 목적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위원 수를 지금 기존에 100명이 되어 있는 안에서도 충분히 분과를 둔다든지 이렇게 아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셨는데 200명으

로 늘리는 이유는 또 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분과가 있고요. 그 위원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을 보면 20명, 30명, 30명 해서 80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들이,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개별 분과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만큼 일정 부분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기존에 10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강기윤 위원** 거기에다가 3개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기존에 90여 명 되는 것을 200명 이내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지금 이것 보면 위원회마다 검토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품 안전이라는, 여기 보고서에도 큰 맥락에서는 유사점이 있겠지만 보시면 분야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맥락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통폐합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각지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일단은 지금 누차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더라도 이런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원회의 독자성이나 전문성은 유지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위원회를 여러 위원회 운영을 할 때 보면 그 운영을 하는 담당 과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 또 붙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파트에서 운영의 효율성이, 저희는 많이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원들의 참여의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을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안 개정안의 취지고,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없도록 분과위원회 운영을 내

실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짜 통합하고 싶다면 아예, 위원회 산하에 전문성 있는 분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7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생제도분과, 유해오염물질분과 해서 7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나열하는 게 더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왜 나열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전문성 있는 분야들이 조금 더 변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율성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분과를 7개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인 운영에서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은 편하고 자율성도 좋은데 그러다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단니까요, 명시를 하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우려에 대해서는……

○**최혜영 위원** 세부적인 것, 위원회마다 다 있는데 이걸 다 통합시켜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저희가 다른 입법례에서도 위원회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재량으로 두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강선우 위원님 하시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들을까요?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말씀……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최혜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부분은 법률에다가 일반적으로 두는 조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뭘뭘뭘을 뭘야 된다고 하면, 개별·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아마 식약처에서 운영하시는 데 힘들 거고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정도 조항은 두더라도 식약처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기윤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통합 전에는 어떤 행정적인 비효율성이 있으셔서 이렇게 통합안을 내셨고 만약에 이렇게 통합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행정적인 효율성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개별 법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법령을 담당하는 개별 행정조직별로 위원회를 구성·위촉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제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분담하는 체계였다면 통합하게 되면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촉에 관련된 부분, 위촉과 관련된 행정적인, 부대적인 업무 부담이 줄고요. 그다음에 전체 전문가들의 풀 내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위촉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별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행정적인 비용 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폐합을 하셔도 각 분과별로 어차피 위원들이랑 다 위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후가 뭐가 달라지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예를 들면 GMO 관련 안전성심사위원회는 평가원의 신소재식품과에서 개별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식품안전정책과에서 전체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한꺼번에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부담이 줄고요. 그런 행정적인 부담을 효율화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폐합하면 어떤 방식으로 위촉이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그러니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정책과에서 전체 위원의 풀을 가지고 해당 과에

서 추천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별 과에서 개별적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한 과에서 전체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행정적인 부담이 주는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강선우 위원 한 과에서 각기 다른 영역의 위원들을 위촉한다면서요, 이렇게 통합이 되면. 기존에는 각 해당 과에서 위촉을 했던 거고. 그러면 해당 과에는 아무래도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을 위촉할 때 보는 눈이 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폐합시켜 버리고 어떤 한 위원회에서 각각 다른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한다는 그 말씀이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예.

○강선우 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예.

○강선우 위원 그런데 위촉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나면 저는 이게 전혀 효율적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이를테면 각 분야별로 전문 분과를……

○강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B·C과가 있었어요.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과에서 A라는 일에 해당하는 전문위원들을 위촉했고 B에서 B라는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 위촉을 했고 C에서, 기존에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F라는 큰 덩어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F에서 A도 위촉하고 B도 위촉하고 C도 위촉하고 이러자는 말씀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그렇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다만 이제 A과에 해당하는 전문가 풀은 A과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을 하되……

○강선우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추천을 하되……

○강선우 위원 어차피 A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그러니까 전문 풀은 추천을 하되 위원을 위촉하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위원……

○**강선우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그런 절차를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대행하는 거지요.

○**강선우 위원**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최혜영 위원** 설득력이 없어.

○**한정애 위원** 저요.

○**소위원장 강훈식**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대통령께서 위원회 수를 줄이라고 하니까 아마 부처별로 이런 것도 실적을 내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5쪽 보면 GMO 관련해서 안전성심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폐합 대상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거나 몇 년에 몇 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서 이것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이게 적게 열리는 위원회인가요? 분기에 한 번도 적게 열리는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실에서 전체를 관장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를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의 대상에 넣어 가지고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봐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정도가 열리는 위원회 정도는 존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내려온 겁니까?

행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과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전문위원은 다 해당 과에서 결국은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해당 분과위에서 결정돼서 예전에는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끝이 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분과위에서 정리가 돼도 이제는 전체 식품위생심

의위원회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다시 한번 열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 내로 해 놓으면 200명의 과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그렇지는……

○**한정애 위원** GMO 관련한…… 그전에는 20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끝이 나는 것을 20명이 되는 위원회를 열어서 20명만 참석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절반 이상이 참석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지금 국회에서도 전체 위원회가 있고 분과별 위원회가 있듯이 저희도 전체 식심이 있고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결정으로 이 안전도 분과위에서 끝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한정애 위원** 분과위에서 끝낼 수 있으면 이걸 왜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분과위에 끝내고 이것을 전체회의에 와서 또 결정하는 구조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과위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사항들을 전체위에는 올려서 한 번 더 걸러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회의 전문성이라는 분야는 한 과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과 통합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은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우려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려이고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정애 위원** 우려가 되는데요. 식품위생심의 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식심은 개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열리고요. 최소한 1년에…… 매월 열리는 분과위원회도 있고 격월도 열리는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는 분과위원회 결정으로 갑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잠시만요.

○**한정애 위원** 분과위원회 결정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GMO 같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결국 끝이 나는 것과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잠깐만요. 회의에 계속 공방이 오고 가서 저도 하나 여쭙보고……

이게 정부는 꼭 필요한 겁니까? 정부가 안을 이렇게 제시했으니깐 여쭙보는데요. 필요해서 해달라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정부는 필요하다고……

○소위원장 강훈식 목표는 뭐니까? 효율성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고도로 집약하겠다는 겁니까? 목표가 뭐니까, 이걸 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정부 내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운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인원을 줄이세요. 100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왜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붙냐 하면 다 합치면 원래 한 180명이었는데 이걸 200명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200명 이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면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인원 자체 가지고…… 인원은 2배로 늘고, 더 늘고 말이지요. 그리고 전문성은 더 떨어진 것 같고 어느 쪽에 중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체제로 하면 전문성이 있다라는 게 동의가 되고 효율성이나 행정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행정으로 보면 위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공전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원래는 180명 정도 규모로 운영되던 것을 150 정도로 규모를 줄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집약적으로 하고 더 효과적인 사람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제시해야 나름대로의 구조조정 또는 아까…… 저는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몰랐지만 대통령이 줄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은 취지도 모르겠고 숫자만 늘려 봤으니 이런 얘기가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논의할테니까 정부도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줄일 수 있으면……

○한정애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좀……

○소위원장 강훈식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강기운 위원님 말씀 듣고 한정애 위원님 말씀 듣고 진행을 할게요.

○강기운 위원 저는 단순히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폐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또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서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행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 없는 데가 있기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열리는 데가 있는 반면에 1년에 열두 번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가진 것을 한 데로 묶어서, 그 위원회를 유지·관리하는 스태프를 한 곳으로 뭉쳐서 스태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여러 업무가 산발돼 있는 것을 한쪽에 집약함으로써 하루 일 양밖에 안 되는 것을 3개를 통폐합하면 업무량도 그 사람에 주어진 시간을 풀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이지 않는, 지금 수치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뭐야 된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아마 200명 내외로 돼 있으니까, 인재 풀을 그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200명 중에서 분과에 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누구를 딱 계속해 놓으면 인재 풀에 대한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 효율의, 어떤 운영의 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을 픽싱해 놓고 20명 돼 있으면 그 위원회를 바꿀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 풀을 200명 두고 하게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기존의 인원수를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통폐합 운영하면 스태프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지 최혜영 위원이나 강선우 위원이 우려하셨던 전문성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재 풀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전문 분야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여백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냥 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십니까만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이게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고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고 내용이 다릅니다. 심의권을 가진 것과 그냥 자문 정도를 해 주는 것은 다르고요. 대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절반 이상 참여해야 되고 참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 심의기능을 가진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부분과 원래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심의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통폐합 되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되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존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문위원회 격으로 해서 의사결정에 자문 정도만 받는 거였는데 아예 이게 또 이상한 구조로 변화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지금 주어진 자료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와 있지는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통합되는 1·2·3번의 위원회는 다들 식약처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전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한정애 위원** 안전의 심의·조정 기능이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문위원회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법상으로 보면 이게 행정합의체 기구나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그냥 이걸 자문기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문기구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보면 심의의 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만 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까 해당하는 각 분과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통합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뭘 하나요? 의사결정은 분과에서 그냥 다 하는데 각 분과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예외적으로 해당 분과에서 전체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제 전체위원회에 부의할 수가 있고요. 통상적인 대부분의 안전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마무리합니다.

○**강선우 위원**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전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식품 등 표시광고 자문 관련한 전문가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한 전문가들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아닙니다. 이거는 그 위원회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회 내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성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전성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던 의사결정체계나 아니면 이 안전성심사위원회가 식심으로 들어와서 개별 분과로, 전문 분과로 운영되는 체계나 의사결정 구조나 전문성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강선우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이 분과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질문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뭘 하냐고 여쭙았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각 분과에서 전체위원회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는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 GMO 관련 된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든 것은 GMO 관련 된 그런 안전이 전체 위원회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리면 그러면 GMO 관련을 광고 자문 관련된 전문가, 어린이 식생활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렇게 다 함께 결정을 하는 거냐고요. 그걸 여쭙본 거예요, 구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구조적으로 보면 향후에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심 위원들이 지금까지는 식품과 영양·안전에 관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향후에 통폐합이 되면, 어린이 식품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식품의 안전과 영양 관련된 위원들이고 그다음에 광고 심의위는 일부 마케팅이라든지 광고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역시 식품 쪽에 그동안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쌓아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참고적으로 4쪽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원을 하는데 그 추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각 위원회에는 유전자변형은 유전자변형의 전문가도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식품표시광고위원회도 일부 산업계도 있지만 식품 관계 공무원이나 소비자단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는 분들이 가서 약간 통합의 효과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전체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은 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잠깐만요……

○한정애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강훈식 한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거 아니면 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더 논의해 봐야……

정확하게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더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려고 통합하는 겁니다’ 이러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은 뭡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통합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원은 더 방대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어떻게 보장된다는 말씀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 이 논의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법적으로 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원장 강훈식 말씀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한정애 위원 지금 법상 분과위를 둘 수 있다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분과위를 쥐서 운영하는데 그 해당되는 분과위에서 그냥 다 결정을 해 버려요. 법적으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분과위를 반드시 두고 분과위에서 의결하는 것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조문이

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뭘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이 논의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강기윤 위원 이게 필요한데, 이해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생각이 차이 나나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게 아니라 저는 강기윤 간사님 말씀도 맞는데 통폐합이라는 단어는 효율성이 강조됐는데 인원이나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효율성이 강조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전문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일부 위원님들의 의구심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논의는 계속하시지요. 다음번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차장님, 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성심사위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구성, 최초, 그거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기윤 위원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는 언제부터 했나요?

○한정애 위원 5쪽에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5쪽에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니까 09년도였으니까 지금 한 14년이 됐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강기윤 위원 지금 현재 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성심사위원회가 지금 식품위생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게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일부 위원들 면에서, 어떤 구성면에서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있지요? 이거는 그래도 2021년도 보니까 12번 회의했는데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는 11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4번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횟수도 적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관리하는 스태프의 효율성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설명을 좀 정확하게 좀 하지. 제

가 그 사업자라면 분명히 통합하겠어요. 얼마든지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이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깔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보면 통폐합 기능이 더욱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설명을 좀 하시고 오래됐으니까 이 부분을 좀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고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존속할 필요가…… 한 번이라도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통폐합하게 되면 그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둔다 하지만 그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상부의, 그와 같은 단위의 분과위에서 했다 하더라도 전체위원회를 열어서 하려고 그러면 다른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통폐합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20명이 한 것보다, 20명이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체 200명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도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인원을 늘린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법안을 단순히 봤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장벽 철폐를 위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남발되어 있는 것들, 각 지자체 할 것 없이 위원회에 지금 현재 축소 기능이 있는 거예요,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굳이 이게 조금 불비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 될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다음에 미루고 갈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위원장 강훈식 근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간단한 거예요. 아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기능은 어떻게 고도화할 거고 효율성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폐합이라는 단어는 효율적인 단어라니까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인원은 더 늘어나고 기능에 대해서 구체성을 어떻게 더 담보할 건지는 말씀을 못 하시

니 그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라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기회를 주시면 4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인적자원을 저희가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별 과에서 모두 관리하다 보면 중복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분명히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의 위원회 통폐합의 목적은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명에서 200명 부분은 아까 강기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풀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늘린다는 차원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민간의 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린 것이지 정부가 특별히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위원 수를 일부 180명 이내의 그런 정도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100명에서 200명을 어떤 다른 의도성이 있지는 않았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풀을 넓히는 것이 요새 다양한 전문성이 있을 때 그 전문가 풀을 넓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풀을 넓힌 것인데 이것이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의 목적은 기존의 전문성은 유지를 하면서 행정적인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데 분명히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자꾸 반복하시네, 그만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꾸 반복하셔 가지고……

2항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휘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내용은 15페이지에 있는 비교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소속이 국무총리고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되기 때문에 각 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등 자문 성격이 강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협의회로 바뀌면서 민간 쪽의 참여가 약간 축소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장님, 수정의견은 내지 않았고요. 식약처에서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계속 심사를 하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안이니까 다음 번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서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걸 갖고 괜히 정부가 낸 의견을 불편하게 또는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셔야 통합의 본질적인 의미…… 그래서 기능은 더 고도화하고 통합을 통해서 효율화하고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현재 지금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 이 이야기 그만하고

다음 안건을 하지 않으면……

○이종성 위원 아니요, 자료 요구만 하고요.

○소위원장 강훈식 예, 자료 요구.

○이종성 위원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비조합원 영업자에 대한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상 동업자조합이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율지도를 조합원이 아닌 영업자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기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율지도의 시기·방법·내용 등을 비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한 경우 자율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율지도의 시기·방법·내용 등을 통보한 후에 자율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조합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지도 현황 및 관련 규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위생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의 직무에 대해서 자율지도업무 수행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업자조합에서는 임직원 중에서 자율지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임명하고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지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거나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자율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행 관련 규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자율지도의 대상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영업자를 포함하도록 해서 당국의 규제 이전에 영업자 스스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민간의 자율 위생관리 기능을 확대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율지도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면 부족한 현행 식품안전관리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고 민간영역 스스로 식품위생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조합원에 대한 자율지도는 조합의 설립 목적 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일부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지도에 대해서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자율지도 대상을 비조합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는 하였으나 공정성 논란 등 여러 의견으로 처리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저희가 다양한 식품안전을 식품안전 단속 공무원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업무범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활동에서 동업자조합 등의 자율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지난 코로나 3년에서도 식품위생·안전에서 동업자조합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율지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비조합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합원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조합원들 스스로가 품질도 올리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는, 행정 당국에서 해야 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단 문제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가서 통제하는 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이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합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식품이나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율통제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통지하고, 사전에 이와 같은 위생관리점점을 하겠다고 하는 통지를 하고 비조합원이라도 조합원이 같은 입장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조합원으로 계속되게 되면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 그것도 자율권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 당국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조합원 스스로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야 할 부분이고. 단지 비조합원에 대한 부분들은 강제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계도해 나가고 또 그것을 조합원인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을 지도해 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역할이, 점검 보다는 그런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컨설팅도 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자체를, 지도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게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시혜를 베풀기도 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걸음마 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도해 가기도 하는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여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비조합원들은 식약처나 지자체에서 관리 안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저희가 지도 단속이라는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혜영 위원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최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자율지도라는 게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최혜영 위원 자율지도라는 게 정말로 공정과 객관성이 있습니까?

○강기윤 위원 아직은 안 하지요.

○최혜영 위원 비조합원들 대상 말고요,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자율지도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매번 파악하고 매번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자율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현장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걸 비조합까지 확대를 하면 과잉 규제 그리고 자율권 침해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비조합까지 풀게 되면 운영 과정에서 영업장에 들어가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도 내리고 규제 당국에서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약간 민간조합의 영업을 간섭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절차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래서 굳이 이것을, 조합원이니까 관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비조합 관련해서는 식약처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기윤 위원 차장님, 저의 법안은 사전에 통지하고 자율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통지해서 그분이, 비조합원이 동의를 하면…… 왜냐하면 이게 감독이 아니라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했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이런 순기능이 많이 있어요. 또 걸음마 단계에 있는 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접목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식음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성도 제고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사람 동의하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요? 동의가 없으면 안 하는 거지만 사전 통지하고 이렇게 해서……

관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자정 노력하는데 비조합원은 자정 노력이 사실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오롯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각지대를 좀 메워 주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율에 근거하는 부분을 두되 사전 통지하고 그 사람들의 오케이 사인 나면 그런 지도를 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지를 했고 대상자가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하고 하면 안 되나요?

○최재형 위원 동의한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냐요, 동의한 거면 알아서 하면 되지 법에 규정할 필요는……

○소위원장 강훈식 그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지난 20대에도 올라왔던 법안이시죠?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때는 왜 반대했나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그때도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비조합원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논의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종성 위원 어쨌거나 지금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지도원에 의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시할 수…… 어떻게 보면 사법권 내지는 행정권한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현장조사에서 불미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지도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지도로 현

재까지……

○**이종성 위원** 페널티로 이어지지는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개의 식품안전 위생업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이다 보니까 그사이의 공백을 메울 어떤 게 있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비조합원의 의지에 반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동의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종성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여기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런데 시행령 위의 중간에 보면 ‘위반사항을 통보’, 감독관청에 통보하는 기능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현재 조합원에 대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이종성 위원** 시정 촉구, 위반사항 통보 이 기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자율이예요, 이건 행정규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위원님 보신 것처럼 2022년도에 78만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는 9만 7928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행정관청에 이런 이런 위생상의 우려가 있는 업소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거나 제도하거나 이런 통보를 한 업체 수입니다, 이게.

○**이종성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엄격히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권한이 여기 시행령에는 안 주어져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예. 실제적으로 위생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 시정 촉구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전체 식품안전·위생 향상을 위해서 이런 업체는 문제가 있으니 한번 행정청에서 유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이런 차원에서 통보하는 겁니다.

○**이종성 위원** 약간의 경찰권까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소위원장 강훈식** 질의 끝나셨으면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건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원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었으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건의 제정안과 1건의 개정안인데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총괄적 검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법 취지는 두 제정안과 개정안이 동일한데요. 공통적인 입법 취지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입법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 성분 및 그 배출물의 시험·측정과 규제, 담배 성분, 배출물의 독성 성분에 관한 정보의 정부 제출 및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방안의 한 가지 일환으로도 이해됩니다.

주요 내용과 각각의 제정안과 개정안의 비교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등은 공통적으로 제조업자 등의 담배성분의 검사와 제출 그다음에 정부의 담배 성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방식인 박주민 의원안은 업무소관을 복지부장관으로 하되 식약처에 위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법 방식의 최혜영 의원안, 강기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업무소관을 식약처로 하고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담배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안과 강기윤 의원안은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강기윤 의원안에서는 영업자가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검사

결과서 내용 중 영업비밀 해당 사항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영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를 관계부처에 송부하는 규정, 국가의 책무 규정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 등 주요 내용 비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의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릴 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체계와 그간의 국회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 체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담배제품의 제조·판매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소관 법률입니다. 금연정책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담배사업법에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발암성물질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현행 두 제도는 담배 제조업자 등이 사업자 책임하에 한정된 정보를 제한된 면적의 담배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포장지에 일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보다 광범위한 담배 성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등을 포함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 정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부 책임하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밑의 표시를 보시면 현행 담배 성분 표시제도와 제정안의 담배 성분 공개제도인데 제정안 같은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에 있는 내용과 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19대, 20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되지는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던 바가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는 20대 국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서 마련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바가 있었는데 유사한 내용의 기재부 소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가 되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 관련 규정을 복지부 소관의 건강증진법에 둘 것인지 기재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에 둘 것인지에 관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담배사업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각각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도 기재부 소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서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 관련 제정안에 대해서 별도 법률 제정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서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 경과에 대해서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등의 핵심적인 내용은 담배 제조업자 등은 담배 성분과 함유량에 관해서 식약처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게 하고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검토해서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필요성은 담배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흡연을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복지부 요청으로 담배 성분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있습니다.

입법 방식에 대한 검토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방식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현재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의 경우 그 목적이 담배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 목적을 담아내는 데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고 유해성분 분석·검토 및 공개 업무는 나라살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다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잠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복지부 그다음에 기재부, 식약처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에서는 정부 합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고드릴 개별 조문에 대해서는 정부 합의 사항을 전제로 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합의된 내용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의 유해성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조사·연구의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소관을 복지부·식약처 공동으로 하고 관리대상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외에 담배 유사 제품을 포함시키고 담배 성분 정보의 공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서 검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간에 합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표에 넣어진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개별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수정의견은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고 이후에 개별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라는 것들의 유해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국민에게 알려 주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식약처도 여러 가지 어떤 부처 간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담은 법령이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를 해 주셨고 복지 분야, 보건 분야에 관련된 2개 부처가 합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합의된 법안을 빨리 조속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복지부도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위원님들 큰 질문이 없으면 항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부터 시작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주요 내용별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법률의 목적, 국가의 책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적은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인데 두 제정안이 유사합니다.

최혜영 의원안은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강기윤 의원안은 담배의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낮추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정안은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담배의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낮춘다는 표현이 자칫 인체에 무해하거나 덜 유해한 담배를 개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점 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의 유해성을 낮춘다는 표현이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건의 제정안의 목적을 종합해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항.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추가적으로 두 제정안의 유해성 관리대상을 각각의 목적 조항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로 하고 있는데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는 연초나 니코틴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입법 의도 자체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초, 니코틴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로 이후 조문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다른 법률이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는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국가의 책무 조항도 이런 제정법을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두는 조항입니다.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의견 들었습니다.

2항으로 넘어가서 정의 하시면 됩니다.

최혜영 위원님하고 강기윤 위원님 계속 끄덕이고 계셔서요.

하십시오.

○강기윤 위원 수정안이 참 좋네요.

○소위원장 강훈식 수정안에 참 만족하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18페이지입니다.

정의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제정안은 유해성 관리 대상인 담배를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담배유해성 관리에 대해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외에 강기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유해성, 유해성분, 담배 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의 정의에 대해서 각 제정안은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담배, 그러니까 유사 담배에는 연초의 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 외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성분, 유해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규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 니코틴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는 금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정안은 담배 유해성분의 공개뿐만 아니라 이를 금연정책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담배 유해성 관리 범주에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항목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25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계획수립 협조 등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두 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이를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식약처장이 주체가 되고 5년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내용으로 두 제정안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와 식약처에서는 공동으로 기본계획 등 수립 그다음에 시행, 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를 하였고요. 담배제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소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인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은 제정안의 입법 취지인 유해성 관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삭제했고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내용에 금연정책의 추

진방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조사·연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계속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입니다.

두 제정안은 모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식약처장 소속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정책위원회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 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안에서는 더불어서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담배배출물의 구분에 따른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과 담배성분의 정기검사 결과서에 관한 내용 중에서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 소속으로 하는 부분을 협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과 식약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 수를 15명으로 조정하면서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강기윤 의원안에 들어 있는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은 유해성 관리 범위를 벗어나서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강기윤 의원안 9조 제1항제5호에 있는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유해성분의 공개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38페이지

지에서 유해성분 부분에 대해 논의하실 때 그때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 유해성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약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위원회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항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담배 유해성 관리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제정안은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조자 등은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약처장은 제출된 검사결과서를 검토해서 품목별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강기윤 의원안은 12조에서 검사결과서 내용 중 정책위원회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13조에서 식약처장은 제조자등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기재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담배성분정보, 즉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정보를 말합니다. 성분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제출한 담배성분정보를 공개하고 원료·첨가물 중에서 인체에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성분정보의 제출 및 공개와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는 식약처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에 대해서 3개의 안을 비교해서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 등이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그 단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혜영 의원안과 강기운 의원안은 유사합니다.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박주민 의원안은 담배, 그다음에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자들이 이번에는 그 결과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최혜영 의원안은 검사결과서를 규정하고 있고 강기운 의원안은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는데 다만 검사결과서 내용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위원회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담배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그다음에 담배,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그 밖에 대령이 정하는 사항 이 부분을 제출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한테 공개하는 공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혜영 의원안은 식약처장이 검사결과서를 검토해서 품목별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강기운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박주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공개하는데 식약처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료·첨가물 중에서 인체에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는 2건의 제정안은 식약처장, 그다음에 1건의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으로 하면서 식약처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제정안은 담배첨가물의 경우에는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배배출물의 경우에는 유해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정기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담배와 담배배출물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검사기관 측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로 확인해 보시면 최혜영 의원안, 강기운 의원안에서는 담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 담배가 포함돼 있습니다.

담배첨가물과 담배배출물에 대해서는 2건의 제정안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담배배출물의 경우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목적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라는 점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은 담배,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 담배성분으로 규정을 했고 이 중에서 유해성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 부분은 복지부와 식약처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해성분으로 한정하되 종류는 세 가지 다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해관계가 있을 부분인데요.

영업비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받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당초에, 유해성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제조업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업비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받되 인체에 무해한 사항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공개 관련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제출단계에서 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모두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제출 단계에서 검사결과서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고 나중에 제출된 그 부분을 공개하는 안,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사 대상과 공개정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유해성분과 유해하지 않은 성분을 모두 제출하게 한다면 영업비밀을 제외하는 규정의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해성분으로 한정을 하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규정은 불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식약처장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부분입니다.

제조사등으로부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결과서, 그다음에 담배성분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검사결과서 외에 유해성 분석·검토 등을 위해서는 담배성분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식약처의 의견과 박주민 위원안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서 등 송부입니다.

영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재부장관, 복지부장관 등에게 송부해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해성 관리 정책 수립 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부처 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입니다.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서 검사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유해성분 정보 등을 금연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그리고 전문위원 설명 중에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42쪽을 보시겠습니다. 42쪽의 수정의견을 보면 유해성분의 정기검사가 있는데요. 여기 줄 친 부분을 보면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고 2항에 보시면 이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영업비밀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원료의 함유량이라든가 배합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제출부분을 한정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 고시로서 정해지기 때문에 혹시나 고시 과정에서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하면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마지막에 하신 말씀만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저희가 유해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시 과정에서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견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 이견에 대해서 적정한 판단을 해서 공개되는 성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대한 우려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한정애 위원 아니, 유해성분인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관계없이 고시로 한다는 것 아닌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해성분을 한다면 저희는 고시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 정부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시의 입법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강기윤 위원 고시에 영업비밀이 들어갈 수 있나요? 대개 유해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렇지, 거의 없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유해성분만 녹여 내지, 다른 것은 뭐…… 배합이나 원료나 이런 부분은 노정인 안 되잖아요.

○한정애 위원 성분이 뭐가 있더라 고시하는 것이지 어떤 성분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걸 고시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 위원 유해성분만 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 영업비밀이나 이게 들어 있지 않아요.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대개 섞는 비율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이지, 유해성분이 들어간 게 영업비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영업비밀이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외국 사례도 다 비슷하게 합니까? 성분만 고시하고 내용들은 고시 안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그것은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개정안처럼 전부를 내고 일부를 제외하는 안도 있고 운영형태는 조금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유해성이라고 하는 것도 유해성의 위해도가 아주 큰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 우리가 발암성 물질 1A에 해당되는 것, 1B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나누듯이요. 그래서 성분에 따라서 조금 달리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유해성이 아주 강한데 함유량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 과다하다든지 과도하게 하는 것들은 기준을 잘 마련을 하셔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품목들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끔이라도 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냥 단순히 품목으로만 아예 성분만 고시한다고 하면 사실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별로, 똑같은 성분들이 결국은 고시되는 건데 뭐가 차이 나냐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강기윤 위원 고시 시에 제조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강기윤 위원 그러면 충분히 어떤 이중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제가 궁금한 건 이것 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이 법안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유해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항목들이 있는 것을 공개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 항목의 비율에 따라서 더 유해하거나 덜 유해한지 소비자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비중이나 이런 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지금 위해성분의 함유량은 공개가 되고요. 원료의 함유량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료나 성분·독성 다 공개하거든요. 그

러면 우리는 원료는…… 성분만 하시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현재는 원료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않고요. 위해성분에 대해서 함유량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 이게 여러 번 법안이 제안됐고 국가별로 운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첫발을 디딘다는 의미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많이 제외하고 일단 가장 필요한 정보는 위해성분에 대한 함유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공표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전문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수정의견 드린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시정명령, 비밀유지의무입니다.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 두 제정안은 제조자 등이 담배성분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 해당 담배를 회수·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에 관해서 두 제정안 모두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제재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 검사 미실시, 검사결과 등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바로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자한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기한을 정해서 당해 기한 동안에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통해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자 등이 식약처의 회수·폐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57페이지 보칙 부분입니다.

두 제정안은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시 수수료, 법률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의제 규정 등 일반적으로 보칙 규정에서 두고 있는 사항을 모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보고 및 출입·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및 출입·검사 등 주체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사전 통지시에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식약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 통지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준용해서 사전 통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권한의 위임 대상에 식품·의약품 분석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추가하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 의제 조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62페이지 벌칙 조항입니다.

두 제정안은 법률 위반에 대해서 벌금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을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도 역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있는 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2건의 제정안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수정의견을 마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에서 동그라미 4번,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대부분 과태료 규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태료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좀 바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형량은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규정을 하면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였고요. 검토의견 중간 보시면, 62페이지 가운데 정도 됩니다.

현행 표시제도 위반의 경우에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성분과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그리고 건강증진법에서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기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1000만 원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300만 원 이하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고의무 위반이라든가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 현재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어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의견 없으면……. 마지막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마지막입니다.

66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각각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혜영 의원안은 공포 후 2년, 강기윤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박주민 의원안은 공포 후 2년입니다.

그다음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에 자료 제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년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 제2조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본칙에 대한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제명을 수정하고 그 내용은 2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일부 문구를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저는 약간 유예기간은 더 당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강기윤 의원안이 1년인데 1년 정도로 당겨서, 이 목적이……

최혜영 위원이 발의하신 지 3년 됐고 이게 무슨 2년씩이나 복지부가…… 업계는 그럴 것 같아요. 업계는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유해성이 알려지는 걸 꺼리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래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강기윤 의원안대로 1년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것은 규제가 강화되는 거라서 업계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것은 법의 취지가 어쨌든 그것을 하자는 거면, 위에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최소한 9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거고 공포 후 1년이면, 강기윤 의원안이 타당해 보이고 법의 취지가 그런데……

저는 행정부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1년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저는 강기윤 의원안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여당 간사님이 아닌데 어떻게,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업체는 그럴 것 같아요. 담배협회는 늦게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담배협회장이라도 한 4년 유예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에 법의 스토리로 보면 근 10년이 넘게 이 법안을 갖

고 지지부진하게 왔는데 이것까지 유예 결정해 놓고 또 뒤로 미루어 주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모아 주시면 그것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그렇게 하시지요. 1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의약처 소관의 법률 심사를 마친 건데요, 권오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강훈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에 대한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급보장 조항은 국민의 연금개혁 동의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연금개혁 시 패키지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측 의견 등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운영 중에 있고 어제 국가 대토론회에서도 우리 연금에 대해서 토론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는 연금개혁과 결부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윤 위원 없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는데 이게 왜 올라왔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연금특위 간사님이 뭐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기윤 위원 이 부분은 어제 의장님 주재하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또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가가 지급보장 하는 문제라든지 총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정부 측 이야기대로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그래도 지급보장이 좀 확실해져야 연금특위, 개혁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한정애 위원 소위만 통과시켜 놓고 전체회의 상정을 좀 미루지요. 연금특위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지급보장이라고 하고……

○이종성 위원 지난 2월 회의 때 패키지로 논의하기로 다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한 달 만에 이것을……

○한정애 위원 2월 회의 때 그렇게 했는데 2월부터 3월 22일까지 연금특위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강기윤 위원 아니, 옥동자를 탄생하려면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굉장히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웃풋 나오는 것은 나중에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연금특위에서 국가 지급

보장 부분은 합의가 된 겁니까?

○강기윤 위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아직 지급보장 그것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지급보장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테 그것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일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 부분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방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40 세대들은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불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간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강기윤 위원 그것 천천히 논의하지지요.

○한정애 위원 연금특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금특위에서 이 정도라도, 그러니까 연금개혁을 전제하되 지급보장 의무화를 먼저 확인하고, 이 정도는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 구조개혁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이나 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개혁을 다 해 놓고 플러스알파로 이것을 보태는 종류의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금개혁을 더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소위에서라도 이걸 통과시키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금특위에 계신 존경하는 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는 하겠습니까마는 연금특위에서도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라도 합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윤 위원 예,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이상 6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3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2건,

강선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1건의 내용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주요 내용은 지금 네 가지 사항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관한 협조 의무 등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보호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학대 현장조사 시에 주민등록 등 신분조회에 관한 정보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의견 부분에 보시면 59조의11에서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서 신분조회를 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사실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에는 거의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에는 없기 때문에 최혜영 의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신 것 알고 있고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진행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근거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서 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복지부장관을 구축·운영 주체로 명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분조회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법제적 문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스템의 상세 내용은 그림이 지금 제시가 돼 있고 복지부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 시스템은 이미 20년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7페이지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한국수어 통역센터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법에 규정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인데요. 지금은 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가 법령의 근거는 없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한국농아인협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고 각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 한국수어 통역센터 자체를 복지시설로 명시하는 부분은 현행 분류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자체가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큰 상위 범주가 있고 그 하위 범주에 수어 통역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수어 통역센터만 법에서 직접 유형의 하나로서 명시하는 것은 현행 분류체계와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이 법제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금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 자체가,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현황 내용이 있는데요. 전국에 걸친 202개소의 통역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나 지침 마련 등을 하는 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7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안은 이 중앙수어 센터의 운영과 설치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문화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한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논거는 지금 한국수화언어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문화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부에서 각종 수어정책에 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이 센터의 설치·운영도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 의견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의 보건복지부가 의견 제시하는 내용은 지금 이 센터의 명칭을 지금 한국수어로 하고 있는데 수어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하고 또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사실은 수어가 국제수화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수어는 기본적으로 표시에 따라서 ‘ㄱ’, ‘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수어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저희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의견이 수어 통역센터를 여전히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수어 통역센터 자체가 지금 지역재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카테고리에는 거주시설 또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또 의료재활시설처럼 큰 카테고리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에 맞게 수어 통역센터가 있는 것은, 다섯 번째에 두는 것은 안 맞다고 보이고요.

지금 저희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어 통역센터를 별도의 법에 규정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더 의견 없습니까?

○최혜영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 항상 의견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선영 이 부분 말씀드리면 한국수화언어법이 문화부 소관 법률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법률 제·개정할 때는 문체부하고 협의하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문화부이기 때문에 그 계획수립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설치·운영에 관해서 문화부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이 이 개정안의 반영사항입니다, 지금.

○최혜영 위원 협의만 하라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예, 협의만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이 점이나 수어 같은 경우가 사실은 문체부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협의 조항입니다. 단순 협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전문위원 계속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성교육 관련된 사항으로 강선우 의원안입니다.

56조의2와 60조의6을 신설해서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성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가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정부도 그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부터 17항까지 이상 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안은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고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 자격을 심의한 후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일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인데 항목별 점수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기재사항을 보면 두 번째 항목에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및 종합점수라고 해서 등급과 종합점수만을 지금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각 항목별로 그 점수를 통보하려는 내용이고 항목의 내용은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면 3개 영역이 있고 항목조사 내용으로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각 반영해서 통보하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항목별 점수를 통보해서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종합조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항목별 점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이에 따라서 특정 항목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답변 같은 것을 제시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관계기관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신청자의 알권리 차원도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따라서 지금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22년 7월부터 항목별 점수공개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5건이 지금 청구를 한 상태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점수를 낱낱이 공개를 해 주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된 행동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좀 신중한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이게 실제로 아까 3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보공개를 해 달라는 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져 보면 사실 해 봤자 몇 건 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결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종합조사 정보 공개 하라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참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판정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는 허용 중이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겠고요.

일단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서 결국은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항목을 보면 옷 입기라든지 목욕하기라든지 그런 판정을 해서 점수를 산정해 가지고 종합점수를 내린 상태에서 점수에 맞게 등급을 내리고 등급에 맞게 활동보조시간을 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기 2쪽에 보면 총점만 나와 있습니다. 활동등급이 중간에 12구간이 돼 있고 155점 받았고 활동급여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항목별로 다 이렇게 저희가 1년에 한 6만 건 정도 신청을 받고 평가를 한 364명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 전체를 다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것이 되려 타당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평가를 한 상태에서 그 뒤에 이분들이 점수 공개청구가 있게 되면 그때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은 가지만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공개가 신청을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혹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예, 자료 배포해 드렸습니다. 복지부 요청해서 배부했으니까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6세부터 65세까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65세 넘으신 분들에도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최소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가게 돼 있고요. 구간별로 보시게 되면 1구간이 465점 이상이 되면 480시간을 받게 돼 있고 돈으로 치면 한 달에 747만 원 정도 되겠고요. 즉 가서 15등급이면 42점을 받게 돼 있고 75점입니다. 그리고

60시간을 받게 돼 있고 93만 6000원 정도를 한 달에 받게 돼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수급자는 면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활동보조라든지 돼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있고 인력이 있고요. 또 시간당 1만 5570원입니다. 예산은 금년도에는 1조 9900억인데 큰 2조가 되고 약 14만 6000명 정도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종합조사표가 있습니다.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구강청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옷을 갈아입는 것을 어떻게 갈아입는가에 따라서 0점, 4점, 8점, 24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24점을 받게 돼 있고 조금이라도 갈아입거나 옷을 찾을 수가 있고 입을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시각·청각·지체장애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24점, 18점, 12점 이런 식으로 마킹돼 있는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기능제한, 왼쪽에 있는 일상 ADL의 옷 갈아입기에 24점, 목욕하기에 18점, 죽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분이 12구간에 종합 점수 155점을 받았는데 155점은 앞에 가시게 되면 12등급, 135하고 165점 사이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장기요양 등급심사하고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도 똑같은 체계인데요. 사실은 우리는 점수를 주지만 장기요양 등급심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없이 그냥 1급, 2급, 3급만 주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지난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정보공개를…… 35건이 결국은 지금 이 표에 대해서 점수 체크된 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주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6만 명까지 다 줄 수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면이 있고요, 행정적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수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뭐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학습된 활동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안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연숙 의원님 또 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면 차관님, 지금 항목별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 ADL 1번부터 13번 이것 아니고 항목이 지금 큰 카테고리로 일상생활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정도의 합계는 보내 줄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어찌 됐든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면 통지서는 오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의 큰 카테고리의 항목별 점수만 체크를 해 줘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는 다 못 주지만, 이거야 이의 신청 하시는 분들, 정보공개 신청하는 분들한테만 보내 주더라도 큰 카테고리에만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조사영역이라고 그러면 옆쪽의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이게 사실은 별표에 나와 있는 조사표입니다. 조사항목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ADL하고 IADL하고 인지행동특성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시잖아요.

○최혜영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항목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조사영역까지 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최혜영 위원 조사영역에서만 하자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최혜영 위원 이게 조사영역에 기능제한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종성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청구를 하면 다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청구를 하면 공개를 합니다.

○최혜영 위원 통지서……

○이종성 위원 청구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편한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종성 위원 온라인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온라인상으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유선으로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찾아가서 다 전화하고……

○이종성 위원 유선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이종성 위원 그러면 전화로 점수를 다 불러 주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그건 표가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유선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청구, 신청할 때 내 것을 신청한다 하게 되면……

○최혜영 위원 전화로 신청……

○이종성 위원 아,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 준다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조사표를 보니까 조사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 마킹한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이기는 하지요.

○이종성 위원 원시자료를 그냥 보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조사원들이 가서 마킹한 것?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니, 그런 개인별로 마킹된 건 아니고요. 컴퓨터라이즈드(computerized)된 마킹자료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쪽의 결과통지서 같은 경우가 이용권 발급, 본인부담금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다가 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청구를 하라는 것도 안내할까 하는 생각 중인데요.

○이종성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상자가 14만 명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이걸 신청해서 받아본 분이 3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수요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다 제공을 굳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런 점수가 정말 궁금하다 했을 때 신청제도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장된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행정력을 여기에 쏟아부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도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이게 행정력이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 결과통지서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자기가 활동보조 신청을 하면 통지서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몇 시간인지. 거기에 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항목별 점수만 기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인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이 선별해서 할 필요도 없고 이의신청이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했구나’……

○보건복지부장대인정책국장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국장님 마이크 주세요.

○보건복지부장대인정책국장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정도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미 작년 6월 22일에 이 판결이 났고요. 그러면 판결 대상한테만 우리가 정보공개를 해야 되지만 6월 30일부터는 저희가 전체한테, 정보공개 오는 분들한테는 다 소송과 상관없이 공개를 하도록 이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가지고 정보공개해 달라 그러면 세부 내용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야기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정도의 점수를 보내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종성 위원 그 통지서에 그런 내용을 고지해 주세요, 자세한 항목별 점수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궁금하실 경우에 거기 어디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리고 이용 방법을 조금 더, 지금 전화로 받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방문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까지는 사실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3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면 70건 정도 되는데요.

○최혜영 위원 그런데 알려셔야지요,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을 좀 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지금의 명수는 홍보를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이 부분은 영역별 점수를……

○한정애 위원 조사영역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조사영역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조사영역으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한정애 위원 대체적으로 서비스 지원이나 또는 점검을 한 로테이터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있거나 하면 주는 경우가 많고요. 로테이터를 줄 정도까지가 되려고 하면 저는 이건 온라인화를, 전산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신원이 보장된 상태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종합조사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 조사항목, 개별 항목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지금까지 체크를 했느냐에 대한 환류가 한번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환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옷 갈아입기를 어디서 어디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아마 가지고는 있을 텐데요. 어디일 경우에 0점이고 어디는 4점이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경계선 부분이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흔히 말하는 균질화가 좀 되고 그 정도의 자신이 섰을 때는 저는 전산화를 꼭 진행하시다가 그것을 그냥 누구든지 원하면 볼 수 있게끔 하시되 그전까지는 일단은 기능제한과 영역 정도로 해서 주고 그 부분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활동보조 관련해서 사이트가 있거든요, 본인이 검색할 수 있는. 거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별도의 서비스창을 만들 필요 없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같이 한번 저

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장애인정책국장님, 최혜영 의원님실에 자주 가서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장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조정될 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부칙 부분을 부처에서 아마 미처,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소위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결정하는 경우부터 하실 것인지 그 부분 판단을 실무적으로 한번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 만약에 이것을 지금 결정된 대로 한다면 이 시행시기를 한 1년 정도로 좀 늦춰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최혜영 위원 1년이요?

○보건복지부장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 예, 지금 세부적인 내용도 저희들이 좀 바뀌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여기 관련해서 지금 364명이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도 더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이의신청이 더 들어오고 정보 공유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혜영 위원 1년은 너무 길지 않으세요?

○한정애 위원 어쨌든 공개가 됐을 때 이의신청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와 줄 때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건복지부장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 저희가 안내는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렇게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 개인정보 이것은 바로 하더라도 이 법 조항 적용은 한 1년 쯤 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그러겠습니다. 1년 후로……

○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시행일을 1년 후로 바꾸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적용례 규정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규칙 양식을 또 중간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시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먼저 첫 번째 사항부터 자료 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의 정의 연령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영유아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실제 어린이집 이용 등을 하는 나이가 취학 전 7세까지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일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정부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3페이지 두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조(벌칙) 규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훼손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훼손당한 자’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미비점이 있었고 지금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지금 4개의 개정안들이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을 누구로 하고 제재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각각 개정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수정의견을 마련한 것이 3페이지 하단에 있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수정의견은 적용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표현을 해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그리고 그 외의 자들도 이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적용을 확대했고,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조항이 추가된 내용은 현행 법령에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출되는 경우는 허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준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러한 유출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와 맞추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도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한정애 위원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항은 없네요? 있나요?

○전문위원 최선영 11페이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조손가정 영유아 역시 1순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한 규정으로 보면서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개정이 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용어를 반영하고 법체계상 별도 호를 만드는 내용인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대상자가 아니라 지원대상자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바뀐 부분을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부모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애들도 저희가 더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보니까 조손가구가 한 5만 2000 가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키우는 애들도 꽤 많이, 한 1300명 정도의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저희가 1순위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이상 6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김상훈 의원안, 조명희 의원안입니다.

김상훈 의원안과 조명희 의원안에서는 공통적으로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지원기관·단체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명희 의원안에서는 취업제한자의 취업여부 점검 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당연히 들어가야 될 기관이 빠져 있는 것이 지금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아, 더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경윤 예.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항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윤 자료 8쪽입니다.

조명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아니, 잠깐……

○소위원장 강훈식 예,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이 과태료? 그러니까 현장출동을 했는데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거부한다, 이거 사후에 한 300만 원 이렇게 차라리…… 일단 영업정지 내지는 굉장한, 현장에서 뭐가 발견됐을 때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단 그걸 모면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도 보면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된 거 요구할 때 원장이 일단 땀다가 다시 나중에 설치한 문제가 최근에도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한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 물고 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한 것 같은데 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이 없을까요,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전문위원 정경윤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가장 높은 게 1000만 원이고 그다음 낮은 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사항을 보면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이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 원을 지금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영인 위원 현재 하는 게 최고치면 1000만 원 이하로 하면 어때요?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요, 그건……

국장님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장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이윤신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에 직원에 대한 폭력,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해서 직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것조차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새로 과태료를 통해서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올리기를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데 다른, 실제로 방해행위나 이게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흥기를 갖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한다든지 이 정도까지 되는 수준에서는 완전 업무방해니까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관의 책임자가 ‘지금 우리 조사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부할 때, 제재하는 걸 어차피 우리가 두기로 한다면 이 정도는…… 기관 운영자로서는 이 정도 벌금을 감수, 일단 모면하고 대응태세를 갖춘 다음에 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면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것은 유사입법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을 주시면 그걸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유사 입법례에 대한 검토는 안 돼 있나요, 아직?

○한정애 위원 아동학대 현장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현장조사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장애인 관련한 비슷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강훈식 이미 나와 있을 텐데요?

○한정애 위원 다들 빨리 찾아볼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조항이, 66조가 있는데 66조가 조사 관련 조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조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의 답변을 회피하는 것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벌금……

○한정애 위원 형사벌이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형사벌이고요. 이걸 과태료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윤 위원 일단 보류했다가 조사를 한번 하지요. 해 가지고 유사한 부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거는 저희가 그럼 명쾌하게……

○**한정애 위원** 잠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는 좀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이따 저희가 논의하고 좀 더, 어쨌든 대부분 위원님들이 고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좀 상향했으면 하는 의견은 있는데 유사 입법례 사례를 점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계속 심사를 하고요.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유사 입법례하고 저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위원장실에 모여서 이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논의를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이니까요, 3시 1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은 위원장실에서 잠시 이 문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훈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 시간 동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저희들이 잠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가장 똑같은, 유사한 형태는 발달 장애인법에 있었습니다. 현장조사 거부·기피 시 과태료는 300만 원이었고요. 지금 개정안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유아보육법의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검사 거부·기피·방해의 과태료 경우에는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자료제출 또는 검사 거부 시 과태료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자료제출 거부 및 검사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상에 조사 등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복지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검사 거부·기피·방해는 500만 원 또 식품위생법 다 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개정안의 내용처럼 5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문제 제기를 하셨던 고영인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이종성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학대 사건이라고 하면 아동복지법하고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아동복지법만 다른 타법하고 비교해 갖고 너무 갭이 커 가지고 무조건 아동복지법을 따라가기는 조금…… 타법들이 과태료 수준이 낮아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데 제가 고영인 위원님을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금액은, 어쨌든 10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해 보이는 건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 정경윤**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지금 현재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동복지법은 형사벌이고요 나머지는 행정벌이거든요.

○**전문위원 정경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가려면 형사벌로 가야 되고……

○**소위원장 강훈식** 과태료 기준으로는……

○**전문위원 정경윤** 위원님, 그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상에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요. 가장 큰 금액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과태료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나?

○**전문위원 정경윤**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일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처해지는 과태료와 학대 현장에 출동하는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당장 피해자가 있는 상태인데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적절하게 못 하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재형 위원** 61조의2 1항으로 옮기면 1000만 원이 되나요?

○**전문위원 정경운**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항은 1000만 원 인데요. 61조의2가 과태료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제한에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노인관계기관의 장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동일·유사 조항이 2항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 한편으로는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또 한편으로는 ‘취업자 등에 대해서 학대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기관의 장’이 500만 원 하에 되어 있고 300만 원은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을 안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한정애 위원** 조문 자체를 좀 옮겨야 되는……

○**고영인 위원**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 기본취지가 과태료라는 게 내가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지 않았을 때 주는 그런 벌칙이 그 당사자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징벌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물가도 많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옛날 법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하등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검토도 해 봐야 되는데…… 아니, 기관의 장이 그런 것 일단 피하고 보자 그게 요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삼사백 만 원 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현재 법에서라도, 지금 노인 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했다가는 큰일나겠다 이런 정도의 경종을 울리는 뭔가 그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경종이 아니라 일단은 벌금, 과태료는 할 수 있으면 그냥 하고 보자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1000만 원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지만, 더 세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라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걸로 좀 하자 이거지요. 그게 뭐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한정애 위원**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게 과태료 조항이 아닌 벌금 조항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은 벌칙 조항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와 같은 사항을 제출을 거부하고 또는 자료를 보존해야 되는 것을 보존하지 않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이고 하는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학대 현장이지 않습니까?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갔는데 그 현장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건데 이게 왜 과태료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조항 자체가 벌칙 조항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노인복지법 57조에는 똑같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라든지 또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린 자라든지 또 알선한 자라든지 그렇게 허위나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벌금 보다는 과태료로 하되 61조의2(과태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종성 위원** 벌금? 과태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과태료 조항.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벌금 주장도 하셨는데 과태료 조항으로 최대치인 1000만 원 정도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위원 정경운**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좋습니다.

보류했던 노인복지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 이상 2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의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은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6항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3항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건은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법수집 자료 사용금지와 건강보험재정 지원 규정 명확화와 일몰규정 연장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법수집 자료 사용금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97조에 따른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유사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례를 일부 찾아봤는데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입장의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해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지에 따라서 개별 판단하도록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들을 고려하고 또 이러한 원칙들은 사실은 개별법에 들어가기보다는 행정법의 어떤 일반 원칙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및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 또는 행정절차법 등에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에서 국무조정실하고 법제처의 의견을 조회했고 의견이 오면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희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것에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명시적인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위법수집 증거 배제 규정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의 불법수집 증거는 그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서 각종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경제거래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너무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미 행정기본법이나 조사기본법, 절차법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당연히 적법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행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한 장짜리 소위원회 심사 참고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동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신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희는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행처럼 5년 일몰 연장하기를 희망하고요. 또 부대의견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한정에 위원님.

○한정에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재정 전체에 대한 예산 편성 또 결산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법안소위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몰제 폐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한정애 의원님께서 법안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 후의 결산,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보고를 하고 지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정보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시도 좀 더 강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논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6항까지 이상 9건의 국민건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대의견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7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대의견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법입니다.

자료 1페이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장의 해임 사유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장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이러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14개, 71개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향후에 다른 상임위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이종성 의원님의 이 심신 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의견에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대안으로 주신 내용 중에 조문을 보면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장기간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다른 부처들 검토의견도 보면 과기부·환경부·농식품부에서도 자기네 소관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장기간이라는 것에 대한 애매한 표현이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것 관련하여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해임 사유 입법례가 있습니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표현이 2014년 입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입법례에 따라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살려서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이 표현을 그대로 쓰되 ‘장기간’이라는

표현만 삭제해서 쓰면 저는 해석상 동일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선영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정부 설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긴 한데 자료 3페이지 현행 10조 제2항의 취지를 보시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해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빼면 당사자, 원장의 임기를 보호하는 데 혹시 불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빼면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이냐, 혹시 그러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고요.

다만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라는 표현보다는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를 보면 현실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고 이사회 같은 데는 아마 객관적인 진단서 등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현으로는 크게 그것 때문에 판단이 좌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점들을 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장기간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은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부처들이 낸 의견들이 다 그것이 좀 애매하다고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선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 법안을 이종성 의원님 내셨는데, ‘장기간’ 빼면 받을 수 있다 이게 행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강훈식 어떠세요?

○이종성 위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사실 이 3호의 본질적인 내용은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게 본질

인데 그 앞에다가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라고 단서를 딱 걸어놔 버리니까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것은 곧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라는 오해 내지는 그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본문만 잘 살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다면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그거는 그쪽 행정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래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그 용어를 제거하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 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된 거지요?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서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빼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부터 47항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정에 의원, 전용기 의원, 최연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고 먼저 개정안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을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 의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 집행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설치 장소 같은 것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료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재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곳도 있고 일부 시설만 운영되는 곳 또 운영되지 않는 곳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어서 자료 2페이지의 수정의견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광지에 대한 소관 부처인 문화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고 실제 최소한의 시설만 있는 곳들은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서 47조의2의 6의3에서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아마 법안을 내신 취지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용 가능하게 하라고 하는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법에 넣었을 때 여러 가지 현장에서 혼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의견 주신 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지침 등을 통해서 지금도 설치 의무 되어 있는 곳에 가급적이면 사람 손이 닿을 수 있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그렇게 지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용 가능한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계속……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최연숙 의원님이 내신 안인데요.

현재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응급장비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갖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재 설치 현황을 보시면 지금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이 다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현실적인 여건상 자동심장충격기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젤 패드 등이 있어서 외부에 설치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보고받으신 대로 24시간 이게 닿으려면 결국은 문을 닫는 시간에는 건물 바깥에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사용

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젤 패드 이런 것들이 날씨에 민감하고 외부에 있을 때 변질이 되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교체를 해 줄 때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법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손에 닿을 수 있는 구조에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예산 등을 통해 가지고 관리나 교체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 행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안내표지판에 대한 이행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부착 의무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시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같은 의견입니다.

2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게 시행을 해서 아직 현장에서는 안착이 덜 돼 있는 상황인데 별책 조항까지 시행되게 되면 우선은 현장에 이것이 안착되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희가 지도하고 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잘 따르지 않거나 하는 게 있다면 그때는 처벌 조항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은 지금은 보류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상황을 판단하셔서 추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한정애 위원 이걸 제가 낸 법인데 사실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별책 조항이 따르는 게 맞는 거여서 12월 22일로 그 일자를 박은 겁니다. 12월 22일에 실시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이게 그

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으면 이런 벌칙 조항이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언제쯤 될 것이나? 복지부가 다 현장을 다니면서 잘 진행되고 있네, 아니네 이런 걸 살펴볼 만한 인적자원이나 이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유예 기간을 적절하게 두더라도 이것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니, 의무가 됐으면 벌칙이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주신 말씀이 맞고. 그러시면 조금은 유예 기간을 두고, 법을 조문은 넣되 유예 기간을 일정 기간을 두고 하시는 방식이 어떠신지요?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을, 어쨌든 계도를 하는 기간을 1년 또는 1년 반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될 것 같고 의무에 아무런……

○**소위원장 강훈식** 복지부 정리됐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강훈식**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문을 수용하고 그 대신 시행을 조금 유예 기간을 두시면 좋겠고 한 3년 정도 두시면 어떨까……

○**소위원장 강훈식** 3년이요?

○**최혜영 위원** 3년이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너무 겁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3년은 좀 그냥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한 2년 정도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러면 2년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사실은 제세동기 관련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가 이태원 이후에 많이들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3년은 좀 긴 것 같고 2년 정도는 최소한……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러면 2년을 해 주시면요……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예.

○**소위원장 강훈식** 좋습니다.

그다음 법안.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9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앞서의 내용과 동일한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응급장비를 점검을 하고 이것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규정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서와 동일한 맥락하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이 부분 역시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것도 저희가 앞의 거랑 동일하게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의무 하면서 벌칙 없느냐 했는데 참고로 이게 작년 21년 12월에 법을 제정할 때 개정 논의를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 의무 조항만 신설하고 제재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소위원장 강훈식** 2년으로?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일정 기간 유예를 좀 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소위원장 강훈식** 같은 시기에 같이 집행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행정부도 받아들이는 거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시지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47항 이상 3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2페이지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가지고서 설명드리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 같아서 2페이지 내용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의 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 이식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종합계획의 내용은 2항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고 이미 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기본적으로 수용 의견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에 따른 의무로서 실행을 하려면 저희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에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대부분 2년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 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 부분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의 교육이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인까지 이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로서 유족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장기구득기관은 재단법인 장기조직기증원이고 현행 업무는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 대상자

의 파악과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대상의 교육을 하는 것은 그 취지상 바람직하기는 합나다라는 현행법 제6조 2항 2호에서 이미 일반인 대상 교육의 근거가 있어서 반영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는 유족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추가하되 현행법 체계에 따라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안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기본 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부합되고 차별 실태 파악을 통해 대안적인 정책이나 복지서비스 등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목적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감염병 업무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 시 전국단위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단위협의회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보건소 상호 간의 교류·협력 및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간의 소통 증진·협의를 위해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2013년부터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 채널 확보와 함께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안 제18조의2제2항 중 시도의 범위에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총괄적 논의 필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3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적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 체계로서 5년 주기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 체계로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19세 미만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당뇨병 환자 356만 명 중 이 법의 적용 대상인 34세 이하 환자 수는 2.5% 수준인 8만 9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당뇨 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당뇨병은 현재 이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어서 현행 법체계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이는 비용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다른 만성질환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받으신 것처럼 이미 심뇌혈관 관계법에서 당뇨병을 포함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21년 경우에 건보 통계로 보면 진료자 수가 한 3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당뇨병 환자 수가. 여기에서 34세 이하 당뇨 환자 수는 8만 9000명 이렇게 해서 전체 당뇨병 환자의 2.5%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를 위한 별도 입법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각종 정책 사업으로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 등록 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만간에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당사업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만 대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통합되면 자연스럽게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되면서 정부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도 당연히 소아나 34세 이하의 1형 당뇨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최근에 건보에서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특히 1형 당뇨 환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병원에 내는 진료비보다는 측정을 위한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보장성 확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별도 입법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정책 질환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인 부담의 경우에 연간 지출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특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뇨병 본인 부담 같은 경우는 특례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게 연간 지출액이 한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만 갖고는 크게 부담은 안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기기나 이런 것들을 자꾸 구매하는 그 비용이 비급여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비용 부담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법안들이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것은 저희가 건보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가지고 흡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하나 궁금해서 여쭙보는데 여기에 기획재정부 의견은 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경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말고요. 지금 이 제정안에 비용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비용 지원. 그래서 아마 기재부가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제가 복지위 와서 한 경험 중의 하나가 기재부 의견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기가.

○한정애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인가

요?

○전문위원 정경윤 예.

○소위원장 강훈식 다른 상임위를 제가 몇 개 해 봤는데 이렇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꼭 그러네요. 기재부가 참 역할이 많네요. 다른 데도, 국토위나 산자위는 안 그래요.

제가 사실 이 법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국민 의힘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당을 떠나서 소아·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당뇨에 걸리면 사실상 평생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인슐린도 그렇고. 국가가 해 주는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일반 당뇨는 어르신이 되고 나이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당뇨 기운도 있고 다 이럴 텐데요. 어렸을 때 당뇨가 된 아이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법안이, 물론 전체적인 병변들을 관리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이것만 왜 특별히 이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8만 9000명의 삶이 너무 처참해서 제가 이런 법안…… 그리고 이 법안을 봤더니 이번에만 제기된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온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획기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심뇌혈관질환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차관님의 말씀을 다 접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어서 저는 사실은 이 토론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최재형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최재형 위원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야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위원장님만큼 깊이 제가 천착을 하지 않은 분야여서…… 다른 질병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그냥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좀 더 강화된 지원,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법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법의 내용을 쪽 보시면 목적, 정의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연구사업을 하고 조사통계 사업을 하고 이런 조항들이 쪽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질병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지역보건법도 그랬었습니다마는 사실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법마다 다 붙어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뭘 할 때 5개년 계획 수립하라고 이렇게 하면, 법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사실은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또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면밀히 검토가 돼서 붙어야만 또 그게 실효성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촉구하고 여기에 정책적인 비중을 두는 것이 목적인다고 한다면 정책질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국의 관심을 제고하고 특별히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받도록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점들을 인지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형 당뇨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라든지 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지원 사업을 최근에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정책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고 특히 소아 당뇨는 어릴 때부터 당뇨병을 평생을 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 하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위원회 만들고 계획 수립하라고 이러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차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소아·청소년들 협회나 이런 데 만나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 복지체제 안에서 이 정도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 의견 그리고 당료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당료협회나 이런 데서 다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도전의 목표로서 이것을 좀 과감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걸 좀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도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서 추후에 저희 의원실이나 여기 강기운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소아·청소년학회나 이런 데 만나 보고 의견도 더 청취를 하고 저희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 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종성 위원님하고 한정에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지금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 법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지원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른 법에서, 뇌심혈관 그쪽 법이 됐든 타 법에 이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타 법에서 그게 적절하게 지원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법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꾸 숫자가 적다고, 나타나는 비율이 적다고 해서 이 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명수 의원님이 시청각장애인 지원법도 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희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피해 내지는 고통 그런 것들이 가해질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얼마만큼 더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충분히 이 법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판단이 돼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어서 한정에 위원님 바로

하시고 차관님 답변 듣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9쪽에 보면 우리 건강보험 진료비 나가는 걸로 보면 당뇨병이 전체 질환 중에서 3위에 해당되는, 물론 이건 전체 당뇨병 환자가 해당이 됩시다만 질환의 인원수로 보거나 실인원으로 보면 인원은 24위인데 어쨌든 진료비가 나가는 것은 3위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정법에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국가가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비용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전체 8만 9000명 중에서, 그게 34세 미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한정애 위원** 19세 미만 환자, 그러면 더 작겠지요. 그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인 환자에 대한 진단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또 혈당관리 의료기기, 혈당관리 비용 등 지원하는 거면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사실 ‘이것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의견 낸 것도 참 그렇다 싶은데요. 이것은 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9세 미만, 특히나 소아·청소년들의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인슐린을 스스로 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요즘 잘 나와 있는 의료기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서 비용도 조금 절감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에서 지원된다면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이 좀 더 국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면 해당되는 사업부터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강훈식** 잠시만요, 강선우 위원님께서 듣고 들을게요.

○**강선우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당뇨병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아 당뇨병 환자 부모이기도 하고 청소년, 청년기 지금 쭉 다 지났는데요.

저는 오히려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포함을 해서 따로 떼어 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

는 게 아이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정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기계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스스로 그냥 전화기 갖다 대서 앱으로 체크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게 되기까지 비용이나 지원이 아이들은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 중의 하나가 우리가 비만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만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질병 중의 하나가 당뇨병인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큰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이 당뇨병을 이렇게 좀 떼어내 가지고 법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내용을 오히려 좀 더 넣어서 풍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들 주신 말씀 취지는 다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도 좀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 또 건보 지원 또 만약에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짜서 정리를 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아 보시고도 ‘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한번 다시 심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작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보고 좀 만나 보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만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의사의정 제51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김현준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제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한 가지 더 있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질병청하고 공동 소관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공동입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강훈식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6항까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신현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자문기구로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업무를 각각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규정에 의해서 2017년부터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돼 오고 있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2022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간주한 것은 제2항에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감염병병원은 현행법 제8조의2제1항의 감염병전문병원에 근거해서 2017년부터 지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고 동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산하에 설치되는 자문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에 현행법 제8조의2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경우에도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대신

에 제8조의2제4항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두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의2제1항 중에서 2015년도에 도입된 감염병연구병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지정 사례도 없고 향후 지정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삭제하고 그 외 제8조의2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동의하십니까?

다음 항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최종윤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된 개정입니다.

13쪽 보시면 입법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조문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경우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2020년 12월, 2021년 2월에 진행된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미비점이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자료 14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병원체를 보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보유 허가를 받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일치하는지 등을 검사하고 유전자 정보 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병원체를 제출하지 않아 재제출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해당 병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26쪽을 보시면 개정안 부칙 2조에서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대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해당 병원체 보유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대한 허위 신고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생물테러 등 사고 발생 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기업의 재산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닌 병원체의 국가 관리 강화로 인해서 기업과 연구 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생물감염병병원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수단으로 과태료가 아닌 보유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병청 의견도 같이 들어 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질병청 의견 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보툴리눔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한 10g 정도만 뿌리면 100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생물테러 용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치료제나 미용제 등으로 사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잘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관리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다른 해외 사례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 많아 봤자 한 2~3개 생산업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 21개 정도의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균주를 보유하고 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생물테러,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부분이 그러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까지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균주들 추적하기 위해서 상당

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이렇게 DB까지 필요하느냐 하면 다양한 유전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생물테러 발생 시에 신속하게 어떠한 균주가 사용되었는지 그 추적에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주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생물감염병 병원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수단으로 과태료가 아닌 보유허가 취소를 왜 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안 할 경우에, 제출을 안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계속 그냥 과태료만 내고 제출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허가 부분을 취소하고, 만약에 이 업체에서 다시 보유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득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보툴리눔을 가지고 민간업체 간에 분쟁이나 그런 부분이……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아니요, 제가 예측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소위원장 강훈식 예측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지금 위원님들은 질문을 안 했는데…… 지금 질병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토론을 할 거니까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강훈식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이 균주 중에 한국에서 순수하게 생산되어 있는 세균·바이러스가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지금 나온 세균 4종과 바이러스 4종 중에?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임을기 의료안전 예방국장 임을기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분리된 걸 말합니다. 보통 보툴리눔균 자체는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아

니면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분양을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업체 수가 지금 현재 총 6개……

○**한정애 위원** 질병청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세균 4종과 바이러스 4종 중에 순수하게 한국에서 갖고 있는 균주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균주가 어떤 게 있냐고 물었어요. 왜 자꾸 보툴리눔에 대해 얘기를 하세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보툴리눔균 부분하고 두창이 지금 현재 백신 관련해서 개발이 2세대·3세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애 위원** 두창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2세대·3세대 균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균주라고 하는 게 계속……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퍼져나가면서 균주의 형태가 바뀌잖아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한정애 위원** 1차에서 2차, 3차 이렇게 되면서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바뀌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아니, 그 균주가 변이가……

○**한정애 위원** 변이들이 일어나지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입니다.

균주에 대한 부분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분리된 균주를 질문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게 첫 질문이에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국내에서 순수하게 분리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국내에서 분리된 건수는 현재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은 못 합니다만 보툴리눔균의 경우에는 지금 8주가 국내에서 분리가 되었다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페스트균은?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탄저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국가기관에서 분리된 겁니다.

○**한정애 위원** 페스트나 이런 것들은요? 총 개수를 지금 묻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러니까 8개 중 지금 2개 정도가……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현재 균주 수가 전체가 있는 것이 생물테러병원체는 316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질문하신 부분이 국내……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아니,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8개 중에서 페스트균, 탄저균, 보툴리눔균, 야토균, 에볼라, 라싸, 마버그, 두창 중에서 저희들이……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페니실린 만들 때 푸른곰팡이에서 어쨌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푸른곰팡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하게 된 이 페스트균이나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게 있느냐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다 어딘가에서 갖고 온 것이지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예, 저희가 국내에서……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하건 이렇게 하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페스트균, 탄저균, 보툴리눔균 할 것 없이 다 해외에서 갖고 왔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와서 그다음에 다시 분양을 하건 재분양을 하건 1세대, 세대를 지나면서 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있는 거지요. 보툴리눔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예, 그런 균도 있고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국내에서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환자로부터나 토양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보툴리눔 때문에 여러 이의 제기를 많이 받으신 상태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그리고 보툴리눔은 지금 아시다시피 큰 회사들이 서로 싸우면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에서는 무혐의가 났고 민사에서는 일부, 어쨌든 민사는 조금 다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원사(原絲)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디 것이냐고 하는, 균주의 오리진(origin)을 밝히게 되면 이것 다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균들과 달리 보툴리눔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과 화장 관련해서 쓰여지고 있고, 흔히 말하는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질병청은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지만 이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오리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업체가 공개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우리로부터 나온 균주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저희는 생물테러에 관련된 정보는……

○**한정애 위원** 아니, 생물테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공개 청구를 한다……

○**한정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제 ‘한국의 기업들이, 이게 우리 것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몰래 너희들이 분양해 가지고 이걸 한 것이잖아’ 해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국에서 순수하게 보툴리눔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딘가에서 분양이 돼서 그다음에 한국에서 2차, 3차 이렇게 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리진을 따져서 미국에 있는 업체인지 덴마크에 있는 업체인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 여기는 균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국가기관이 그 균주를 다 가지고 있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해.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애 위원** 절대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만약에 이 부분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대개 소송이 진행될 때는 그 법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않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런 법적 장치는……

○**한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지금 의약

계에서, 특히나 바이오의약계에서 질병청이 제정하려고 하는 이 법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 그걸 해서 저희들도 좀 더 의견을 들어 보고,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도 조금 듣기는 했는데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 기업체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도, 이런 균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없고, 다만 이 균주를 다루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다루는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지 이 데이터를 국가가 ‘우리가 수월하게 어쨌든 일을 해야 되겠어’라고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데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어쨌든 바이오의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질병청이 단순히…… 당연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관련한 것을 관리하고 싶겠지만 한쪽으로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한정애 위원** 그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 뭔가 법을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시달리게 하지 마시고. 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보툴리눔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소위원장 강훈식** 저희 회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기운 위원님 질의 순서로 하고 그다음에 차장님 답변 듣고 다시 또 위원님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업계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최중윤 의원님 법안인데요 그 배경을 보시면 어쨌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하게 초래될 게 있어서, 보톡스를 국민들이 맞는다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물질인 것도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국감 때 최중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질병청에서 조사까지 했었고 그리고 지금 관리 역시 미비한 상태인 거지요. 관리

자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DB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업계 입장도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보시고 이 위험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DB 구축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 차장님!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강기윤 위원 지금 많은 위원들, 저도 그런 쪽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안을 낸 분의 순수한 생각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쪽에 어떤 포커스가 있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저희들은 그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 균주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것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균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가 자율 신고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앓는데, 어떤든 이와 같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균 4종, 바이러스 4종 외에 더 있을 수 있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강기윤 위원 없습니까? 더 있을 수 있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8개 종입니다.

○강기윤 위원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강기윤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생물테러가 여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가가 그런 업체가 또 그런 생물테러병원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을 질병청에서 감별해 낼 수가 있나요? 균주를 동일성 내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겠어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강제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강기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본래의 목적이 그렇게 병원체를 제출받아서 질병청에서 관리한다는 데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생물테러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균주를, 균주의 어떤…… 예를 들면 어디서 나왔다 하는 부분을 하는데 균주에 대한 어떤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균주가 그쪽이 제출한 것과고의 동일성 내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실력이 되어 있나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그 부분의 유전자 분석을 해서 유전자 배열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 질병청에서 분석을 하면 이 균주는 이렇게 쪽, 그 상태를 알게 되지요.

○강기윤 위원 혹시 이와 같은 병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균주 제출을 받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탄저테러의 경우에 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범인, 혐의자를 찾아낸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의 균주 일치 여부,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과 균주의 일치 여부는 생화학적이거나 유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치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성에 대한 문제, 동일성 부분에 대한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사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저희는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균주의 제출된 보유허가 시의 정보, 저희한테 제출된 정보에 대한 일치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생물테러가 일어나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와 같은 생물병원체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나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보건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 목적이지요.

○강기윤 위원 보건안보 차원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이 병원체를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독소를 제조·생산하는 업체 수가 거의 한두 개 정도밖에……

○**강기윤 위원** 한두 개 정도 있다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기윤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병원체를 가지고 이렇게 생물테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병원체를 관리하는, 외국에는 한두 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는 균주를 다시 재생화하는 데가 스물 몇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스물하나.

○**강기윤 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데겠지요, 균주들을? 어떤든 미용으로 이용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치료제로 이용하거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잘못하면 테러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테러 물질로?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강기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나라, 미국과 같이 몇 개 안 되는 그런 생산업체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시설이나 취급자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21개의 업체 또 앞으로 더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시설·취급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균주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면,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기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약이나 바이오 쪽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도 하고 또 바이오헬스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내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런 병원체를 국가가 관리해서 혹여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체를 관리하는 것은 좋겠는데 이게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외국의 사례가 이런 테러에 또 우리나라가 테러에, 이와 같은 병원체를 가지고 테러에 악용된 사례가 있다든지 해서 관리의 필요성 내지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

데, 갑자기 전 세계에도 없는데 이와 같은 병원체 제출을 의무화하고 또 국가가 관리하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앞으로 생물병원체, 미생물을 통한 무기화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갖추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조금 전에 최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이래 가지고 질병청에서 조사가 나가고 그랬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질병청의 조사는 민간 간의 거래행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위험물 관리와 관련된, 그런 위험물질 확산이라든지 또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수준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위험병원체 관리시설이라고 BL3나 BL4 같은 것이 전국에 한 8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위험병원체들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설관리도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관리도 병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격 제한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종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청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인데, 생물테러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비대칭 무기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미연에 우리 국가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되기를 또 제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최재형 위원님.

○최재형 위원 대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생화학테어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관리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균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균주 제출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이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보툴리눔균인데요, 보툴리눔균 자체가 생화학테어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추출된 독소가 쓰이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물테러의 관점에서는.

○최재형 위원 보툴리눔균 그 자체도 독성물질로서 하여튼 우리 생화학테어로 사망 또는 마비 이런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독소를 추출해서 하지 않더라도?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예, 무기로 쓰일 때는 독소를 정밀하게 추출합니다만 일반적인 생물테러로 할 경우에는 독소를 생성하는 균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재형 위원 자연에 이런 균이 있을 때 거기에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상태일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에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배양 조건을 가지고, 균을 배양한 배양물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인체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 위원 지금 균주를 제출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것이 어디서 누가 가지고 있는 보툴리눔균에서 나온 것인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최재형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보툴리눔균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종이 있는 거네요. 변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최재형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랑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보툴리눔균이라도 소위 변종이라고 그러나요? 다른 거지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예, 염기서열이 상이합니다.

○최재형 위원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보툴리눔균의 이종이든지 변종이든지 존재하는데 그게 혹시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보관 중에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가능합니다.

○최재형 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바이러스도 델타, 오미크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할 때는 A라는 회사는 델타를 신고했고 B라는 회사는 오미크론을 신고했고 D라는 회사는 다른 것을 신고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생화학테러가 발생했는데 델타가 쓰였어요. A라는 회사에서 델타를 처음에 제출받았겠지요. 그랬는데 A라는 회사는 이것을 쓰다 보니까 오미크론으로 변이하고, 오미크론을 쓰던 회사가 델타로 변이하고,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호 간의 변이는 불가능한가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일반적으로 생물계의 진화 과정에서 세균들의 진화 과정에서 보면 배양 과정에서 변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상당한 변이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통 분류적으로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그러한 균주의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과학적인 기술로 계통분류학적인 분류 방법으로 그것은 추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일성에 대한 판정은 아닙니다.

○최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동일성을 판정할 수는 없다 그러셨잖아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저희가 동일성을 판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재형 위원 추적해서 결국은 유출된 근원을 찾아서 봉쇄하든지 책임을 묻든지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그렇습니다.

○최재형 위원 그런데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그 부분이 좀 의문인데,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그 부분은 미국 FBI가 탄저테러의 경우에도 실험자의 플라스크와 염기서열 분석결과에서 유사성을 확인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다른 혐의를, 지문과 같이 그러한 것을 빨리 추적해서 그다음에 다른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판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염기서열분석은 저희가 DB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지문과 비슷하게 빠른 추적을 하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사실은 그 쪽이 아니라 다른 데서 변이가 돼 가지고 독소를 추출해 가지고 생화학테러에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극단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개연성은 낮다고 봅니다.

**○최재형 위원** 그게 결국은 형사법적으로, A라는 어떤 균주를 제출받았고 생화학테러에 발생된 게 보니까 A라는 데서 나왔는데 원래 제출했던 회사에 갔더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아닙니다.

**○최재형 위원** 거기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데서……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균주의 염기서열 부분에서 동일성과 유사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유사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과학적인 증거와 그 부분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거기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그것들이 종합적인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판결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형 위원** 이것은 과학적인,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여기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균주를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계에 전례도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추적하는 데 과연,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도 쓸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균주를 제출받음으로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그 원인을 찾아서 봉쇄할 수 있

는 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임을기** 저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저희가 DB를 구축해 놓으면 지문 등록을 해서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생물테러가 발생하면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하던데 그렇다면 꼭 A 업체의 것이냐, 동일성까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재형 위원** 지문은 거의 100% 맞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이게 유사성이 있느냐, 일치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률이라든지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자료라도 좀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다만 지금까지 미국 FBI가 탄저균의 경우를……

**○최재형 위원** 아니, 보툴리눔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니까.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보툴리눔의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판정한 사례가 있고 현재 민사에서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해서 판정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과학계에서 동일성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사성으로 수렴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재형 위원** 저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소송에 관련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균주를 제출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수단이나 이 부분 때문에 여쭙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송에 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아까 한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 산업계에 불이익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안 내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많은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균주를 제출받음으로 해서 생화학적 테러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얼마큼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또……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소위원장 강훈식** 잠시만요, 여기 먼저 신청하셔서요. 고영인 위원님 하고 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아, 오케이.

○**고영인 위원** 얘기가 계속 공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건 위험성인데 아까 10g이 1000만 명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뭐였지요? 예를 들은 게 무슨 균주였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보툴리눔균.

○**고영인 위원** 아, 그것 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하신 거고, 이게 선진국하고 다른 것은 한두 개의 민간업체가 있을 때는 그나마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20개, 30개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일정 통제 바깥으로 벗어남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위험성을 가져온다 이것 때문에, 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제약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까 여기서도 의견이 나왔듯이 영업비밀이나 핵심 내부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기업행위가 침해받는다는 것 하나하고 이것을 너무 통제하다 보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킨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검토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내부 정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크게 다툼이 있는, 기업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행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또 연구활동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마는 아까 관계법 9조 말씀드렸듯이 재산침해나 기업 영업비밀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정보를 갖고 있어도 공개는 제한된다는 부분들을 좀 더 기업들과……

○**고영인 위원** 다른 기업에 유출될 염려는 없다?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지금 저희들이 법

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영인 위원** 그래서 그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그런 건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런 사항들을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아니하겠다는 부분들을 좀 더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리를 좀 해 볼까요? 더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우리가 범죄나 테러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종, 4종해서 8종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게처럼 수백만 개가 있고 많아서 사고가 한 번 났을 때 진짜 어디에서 뭐가 터졌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라 탄저균이건 페스트균 보툴리눔이건…… 이게 다 합쳐서 몇 군데입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보유 기관은 27개소입니다.

○**한정애 위원** 27개소에서 발생한, 그중의 하나의 균으로만 한정한다면 또 달라지겠네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다 달라지겠지요?

탄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또 그보다 훨씬…… 몇 개입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적겠지요.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발생했을 때 2개면 2개, 3개면 3개의 기관의 균을 비교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지금 테러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정 균주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 균주에 대해서 27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분석해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미리 DB를 가지고 있다면 매칭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수렴해 들어가는 추적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가 DB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27개 기관에 대한 부분을 빨리 파악해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파악은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해당되는 균주를 취급하는, 왜냐하면 이게

제1종 테러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리스트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군주로 테러를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결국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것을 취급하는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확인을 해 나가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그건 얼마 안 되니까요. 업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한정애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유사하다는 것 정도만 확인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런데 유사하다는 그게 상당히 증거력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기관 중에서 사실상 탄저균은 한 6개 업체, 페스트는 2개, 야토균은 4개, 그 정도 소수밖에 안 되는데 보툴리눔균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26개소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습시다.

○**한정애 위원** 그게 일반 범죄 일어나는 숫자로 보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균을 취급하는 기관이나 취급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이 법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기업계에서 다들 염려하는 부분들, 특히나 바이오 업계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는 오늘이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그 업계하고 한 번쯤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정도로 해서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보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위험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 법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는 안 되지요’라고는 말씀을 하는데 업계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래서 그게 바로 신뢰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에 규정돼 있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으면……

○**한정애 위원** 질병청이 지난번에 확진자 명단,

원래 법에 보면……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정애 위원** 확진자 명단을 어디에도 못 주도록 되어 있고 주게 되면 바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당자에게 다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

○**한정애 위원** 안 했지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논의했는데요. 차장님, 우리가 단일 법안으로는 이렇게 오래 한 건……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정리할게요.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되기는 요원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질병청에서는 의지가 있으면 의지 있는 만큼 설득과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궁금한 위원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누셔야 그다음 번에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저는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그래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감독 강화 관련 법안은 그냥 항목 보지 않고 넘어가고요. 3번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 여기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자료 28쪽입니다.

최연숙 의원안, 이용빈 의원안입니다.

최연숙 의원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빈 의원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건의 개정안에서는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정책의 결정 과정에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연숙 의원안으로 이렇게 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단서 규정을 조금 붙였으면 하는 게 저희 질병청의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 호의 사유를 봐도 신종 감염병이 출현했을 때,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제대로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회의를 하다가도 조금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해서 다양한 의견 개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까지도 공개를 하게 된다 하면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에 불확실한 그런 정보들이 사회에 확산돼서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을 조금 달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청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단서 규정은 어떻게 달기를 원하십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여기서부터 조금 더 달아 달라는 건데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한정애 위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서 건정심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위원회가 원하면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즉시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공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즉시 나와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공개한다 하더라도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윤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 하니깐 전혀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질병청에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일자하고 제목만 줬어요. 몇 월 며칠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한 것 그것밖에 안 주고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을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데 전혀 안 줬어요. 방금처럼 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하면, 그걸 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뭐 전부 다 비공개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달라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관리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감염병관리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무슨 정보가, 국가적인 어떤 기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아니, 여기에 위원님으로 참여하시는 분……

○소위원장 강훈식 차장님, 저한테 발언권 신청하고 하셔야 돼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말씀 마저 하십시오, 강기윤 위원님.

다 하셨어요?

○강기윤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은 혹여나 그런 것이 중간에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회의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 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연속적인 회의가 된다면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든 그 주제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중점이 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요. 물론 감염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은 위원님들이 다 같은 것 같고요. 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정해서 공개는 다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향후에라도 올바른 감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한정애 위원님 말씀과 강기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을 좀 더 늦춘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조금 구체화해서 정점이 지난 다음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최재형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최재형 위원 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가 감염병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동일하게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자유롭고 또 충분한 논의에 제약으로 작용될 수 있고 결국은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익이 더 크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공개 여부를 본인들이 다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한다는 정도의 어떤 안을 가지고서 보완하는 방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내용을 알겠다는 것까지, 그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 또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조건을 붙여서 공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의견을 좀 좀혀 보실까요, 이제? 대부분 대안도 나왔고 차장님 입장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서로들 의견을 좀 좀혀서 만들어 보시지요.

○한정애 위원 참고자료도 들어와 있는데요, 30쪽에 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를 끝내고 난 뒤에 3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어쨌든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워낙 민감한 내용인니까 그 회의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공시는 되더라도 3개월 정도 뒤에 어쨌든 공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고, 특히나 거기에 개인식별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를 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기윤 위원 이걸 공시에 대한 거라서 3개월 이렇게 한정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감염병관리위원회라든지 회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최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회 의견을 또 관계 당국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제출한다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이러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서 상임위가 의결해 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방금 최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차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회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론을 도달하기 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데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원래는 이런 자료를 안 줘니까?

○강기윤 위원 잘 안 주잖아요.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상식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되게 우리가 상식인 것처럼 지금 의결하는 것도 저는 약간……

차장님도 약간 웃기시지요, 현재 상황이? 상임위가 요구하는데, 그걸 막 의결해서 달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건지 잘 납득이 안 가세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들을……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 식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기윤 위원 개인 식별은 의미 없어요.

○소위원장 강훈식 회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열람하고 이런 거지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국회가 알고 싶으면 상시적으로……

○강기윤 위원 회의록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건 상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위원장님 말씀하고 강기윤 위원님 말씀 그리고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씀 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강훈식 끝을 흐리지 마시고요. 잘 정리해서……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서 의결한 건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렇지요. 그냥 저희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개인식별정보 때문에 그러시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강기윤 위원 그 대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다음번……

○소위원장 강훈식 한 번 더 논의하자는 말씀이세요, 준비해 가지고 오신다고? 그 말씀이세요?

○한정애 위원 그러시지요, 계속 심사하시지요.

○강기윤 위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고.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다음번’ 이렇게 얘기하셔서.

○소위원장 강훈식 제가 표정으로 대화가 되기 시작해서요. 차장님 표정 보면 대화가 돼요, 제가.

○강기윤 위원 말씀을 하세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 말씀이시지요?

○최혜영 위원 계속 심사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그러시지요. 계속 심사하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소위원장 강훈식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아니, 위원장은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잘 알아들어요?

○소위원장 강훈식 예, 저희가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검토해 보시고요. 질병청에서 검토해 보셔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인식별자료를 저희 국회의원들이 알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들, 점검, 이게 필요한 거고요.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요.

정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경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금 예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생활에 관련된 건 비공개로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두 가지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위원들은 이미……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는 어차피 개인정보는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전체 위원들의 요구사항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당연히 그런 개인정보

와 관련된 것들을 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며, 두 번째로 향후에 질병청에서 논의해 줄 것은 어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준비해서 다음번 논의에 올리도록 할까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예.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시지요.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이미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면 원활한 정보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검토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및 56항의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5항까지 이상 3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결핵예방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김원이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는 해당 타 시스템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제외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연계 규정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이 역시 또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여타 시스템과의 연계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정보 연계 및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예방관리사업의 이행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질병관리청차장 김현준 검토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            |   |   |   |
|------------|---|---|---|
| 제 1 차 관    | 이 | 기 | 일 |
| 제 2 차 관    | 박 | 민 | 수 |
| 장애인정책국장    | 염 | 민 | 섭 |
| 연금정책국장     | 이 | 스 | 란 |
| 건강보험정책국장   | 정 | 윤 | 순 |
| 건강정책국장     | 진 | 영 | 주 |
| 공공보건정책관    | 박 |   | 향 |
| 정신건강정책관    | 곽 | 숙 | 영 |
| 노인정책과장     | 이 | 윤 | 신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차 장        | 권 | 오 | 상 |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 유 | 현 | 정 |
| 식품안전정책국장   | 이 | 재 | 용 |
|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 우 | 영 | 택 |
| 식품소비안전국장   | 김 | 용 | 재 |
| 질병관리청      |   |   |   |
| 차 장        | 김 | 현 | 준 |
| 감염병정책국장    | 조 | 은 | 희 |
| 의료안전예방국장   | 임 | 을 | 기 |

## ○출석 위원(8인)

강 기 윤    강 선 우    강 훈 식    고 영 인  
이 종 성    최 재 형    최 혜 영    한 정 애

## ○청가 위원(1인)

김 민 석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진    선    희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정    경    윤